

소비(巢脾, 벌집)의 수입허용 조건, 검역 방법 및 기준(제34조 관련)

1 수입허용 조건: 소비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.

가. 소비를 생산하는 농가 및 시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.

1)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50km이내에 위해로운 응애류(Acaria spp., Varroa spp., Tropilaelaps spp.등)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.

2)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10km이내에 아메리카부저병(American foulbrood disease), 유럽부저병(European foulbrood disease), 노제마병(Nosemosis of bees), 백묵병(Chalkbrood disease), 낭충봉아부패병(Sacbrood) 및 꿀벌 마비증(Bee paralysis)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.

3)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의해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타 양봉장으로 부터 꿀벌, 꿀벌 생산물 또는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아니하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즉시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신고하는 곳이어야 한다.

나. 소비는 생성 단계로 산란 전의 것이어야 한다.

다. 선적 전 7일 동안 살아있는 꿀벌과 접촉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.

라. 수출국 국가에서 공인한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소비의 두께 100mm이하로 Cobalt-60을 이용 25kGy 이상의 처리를 해야 하며, 방사선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(indicator)가 부착되어야 한다.

마. 소비 내에는 애벌레·유충·성충(죽은 것 포함), 벌 기생충, 식물성 물질(벌꿀, 프로폴리스 및 화분 등)등 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.

바. 소비는 멸균처리된 기밀성 있는 용기로 포장하여야 한다.

2. 소비의 검역방법 및 기준

가. 검역 장소: 지역본부 구내 검역시행장

나. 서류 검사

1) 역학조사

가) 동물검역 증명서 명기 사항 확인

나) 소비 수입 허용조건 이행여부 확인

2) 방사선 조사 증명서 확인 철저

가) 국가공인 시설 및 조사 성적서 등 확인

다. 현물 검사

1) 검사수량: 신청건별/컨테이너별 5%

2) 검사요령

가) 성상 및 부패여부 등 현물검사 실시

나) 애벌레·유충·성충(죽은 것 포함), 벌 기생충, 식물성 물질(벌꿀, 프로폴리스 및 화분 등) 및 기타 이물이 함유여부 확인

라. 정밀 검사

1) 검사기관: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

2) 검사방법

대상 질병명	검 사 방 법	검사요령
부 저 병	원인체 동정	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
기생성응애류	원인체 동정	
석 고 병	원인체 동정	
백 목 병	원인체 동정	

3) 시료채취 요령

가) 채취용기: 멸균된 종이, 포장 등 사용

나) 시료 채취량: 검역신청건별/컨테이너별 소비 10개 무작위 채취

다) 시료종류: 소비내의 밀랍

라) 채취방법: 밀랍을 5×5cm 크기로 5곳(상단2곳, 중앙 1곳, 하단 2곳)에서 채취

3. 불합격품 처리

○ 소비 검역결과, 꿀벌의 전염성 질병 및 내·외부 기생충이 진단 또는 검출되었을 경우와 소비에 애벌레·유충·성충(죽은 것 포함), 벌, 기생충, 식물성 물질(벌꿀, 프로폴리스 및 화분 등) 등 이물이 함유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

4. 소독 조치

가. 검역증명서 교부 후 수입자에게 공인 방사선 조사시설로 안전 운송 및 방사선 소독(소비의 두께 100mm이하로 Cobalt-60을 이용하여 25kGy 이상) 조치 명령

나. 수입자는 공인된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소비의 두께 100mm이하로 Cobalt-60을 이용하여 25kGy 이상의 처리

다. 관할 지역본부(사무소)에서 현지 출장하여 방사선 소독실시 여부 확인 후 개방 조치